

0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기간 적용기준 변경 안내

■ 관련근거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839호(2010.4.7)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안내”

■ 적용대상 및 변경내용

- 신고(제출)기간 및 처리기간 적용기준
 - 변경후 기준 적용일 : 2010. 4. 7 (단, 2010. 4. 30일까지 변경전 기준으로 신고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

적용 대상	변경전 기준	변경후 기준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제출)기간”: 민원인 -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적용 - 신고(제출)기간이 “○○일이내”는 초일과 토요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미산입 단, 기간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경우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 민법 제6장(기간) 적용 - 신고(제출)기간이 “○○일이내”는 초일은 미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 단, 기간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경우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른 “처리기간”: 협회 - 경력신고서 - 경력변경신고서 - 전력기술인수첩·설계사면허증·감리원 수첩 발급신청서 -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적용 -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서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산입 -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미산입 -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함	• 변경전과 동일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신고(제출)기간”은 민원인(설계·감리업자 또는 자체감리기관)이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등을 협회에 신고(제출)하는 신고기간 적용기준이며, “처리기간”은 협회가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등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처리기간 적용기준임

02 선금급 보증수수료 약정이자율 인하 안내



협회는 2010년 5월 1일 신규 선금급보증서 발급분부터 종전 약정이자율 11%에서 4%를 인하하여 **7%**를 적용하여 드립니다.

- **대 상** : 지급보증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체결업체
- **시행일** : 2010. 5. 1일부터 ~
- **변경 약정이자율** : 7% (종전 11%에서 4% 인하)
- **경과규정** : 위 약정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이전에 선금급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다.

※ **약정이자율이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3 제34조(재권확보)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인 경우 위 재권확보를 위하여 약정이자상 당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함

◆ 아름다운 명언



에드먼드 스펜서

당신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비라는 비를 청취할 수 있으며,
 마음속에 품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천천히, 날마다 조금씩,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You can do what you want to do,
 accomplish what you want to accomplish,
 attain any reasonable objective
 you may have in mind,
 but you can do it gradually,
 day by day, and play by play,
 if you want to do it, if you work to do it,
 over a sufficiently long period of time.